

# kiri Weekly

2012.11.12 제207호

## 이슈

이혼 시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향

## 포커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최근 논의 내용

## 금융보험 해설

제3보험의 이해 2: 질병보험

## 국내금융 뉴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

##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10월 신규일자리 큰 폭 증가

유럽 \_ 유로존, 2013년 0.1% 성장 전망

일본 \_ G20, 유로존 위기보다 日-美 재정절벽 현실화를 더 우려

중국 \_ 최근 중국 위안화 강세의 시사점

##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 이혼 시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향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대환 연구위원

## 요약

-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매우 높아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최근 황혼이혼의 증가로 이혼 시 분할연금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 분할연금제도는 1998년에 도입되어 2007년 일부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음.
- 첫째, 이혼 즉시 연금이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이 지급 될 때에만 연금분할이 가능하여 이혼 후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변화(장애, 사망)로 인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음. 둘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만 분할을 허용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이전에 연금계정에 기록된 소득 내지 기여금은 분할하지 못하므로 개인의 독립적인 수급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셋째,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한 분할 비율의 조정은 허용되지 않아 분할연금의 재산권 성격이 반영되고 있지 않음. 넷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분할연금의 수급을 허용하여 5년 미만으로 결혼생활을 한 후 이혼한 부부는 분할연금의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섯째,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재혼이나 사망 시 해당 분할연금을 노령연금 수급자가 재수령할 수 없어 노령연금 수급자의 노후빈곤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여섯째, 국민연금이외에 특수지역연금 및 사적연금의 경우 분할연금제도가 없어 연금제도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혼 시 분할연금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노령연금수급권 발생 이전에 연금계정에 기록된 소득 내지 기여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소득분할형태의 분할제도가 도입되고, 이혼 즉시 연금의 분할을 실시하여 노령·장애·사망 등 제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법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거 중인 부부에 대해 제한적으로 분할연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연금의 분할은 기본적으로 2분의 1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 및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연금분할 비율이 예외적으로 조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혼이 급증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분할연금 수급자격에 필요한 최저 혼인기간을 5년 미만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분할연금제도의 형평성차원에서 특수지역연금에도 국민연금에 준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에도 분할연금 관련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1.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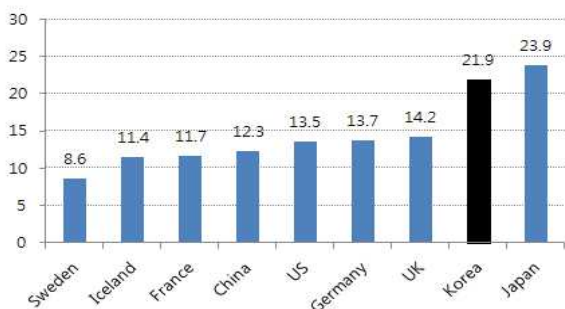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매우 높아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더욱 중요함.

- 과거 50년 동안(1960~2009년) OECD 국가의 기대수명은 평균 11.2세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7.9세 증가하였으며,<sup>1)</sup> 특히 여성의 기대수명은 84.1세로 남성의 기대수명 77.2세보다도 7세 정도 높음.<sup>2)</sup>

■ 최근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지만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로 인해 노후준비 또한 남성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혼 시 분할연금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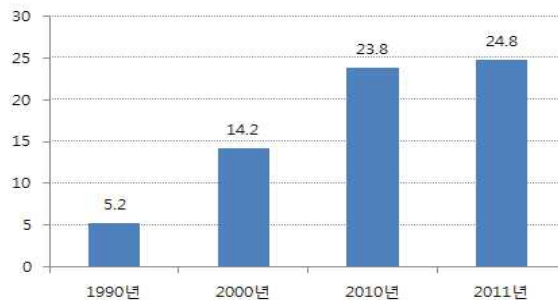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1980년대 22,980건에서 2010년에는 116,85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가진 후 이혼하는 황혼이혼 비중이 2000년 14.2%에서 2010년 22.8%로 급증함.<sup>3)</sup>
- 하지만 남성중심의 노동시장 참여가 남성 중심의 노후준비로까지 연계되면서 이혼 이후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여성의 의존도가 증가함.

〈그림 1〉 남성과 여성의 노동참여율 차이



자료: 통계청(2010), 『사회조사』.

〈그림 2〉 이혼자 중 황혼이혼 비중



자료: 통계청(2012, 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분할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외사례와 비교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OECD(2011), "Health at a Glance".

2) 통계청, 2010년 생명표.

3) 2010년에는 서울시에서 황혼이혼(동거기간 20년 이상)비중이 27.3%, 신혼이혼(동거기간 0~4년) 비중이 25.0%인 것으로 나타나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추월하였음.

## 2. 분할연금제도의 현황 및 내용



■ 연금분할제도는 혼인기간 중 획득한 연금의 청구권을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임.

- 이러한 연금분할제도는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 배우자의 노후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부터 도입됨.
- 또한, 연금분할제도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하여 공적연금제도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연금의 분할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의 청구권이 될 수 있음.

〈표 1〉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관련 규정

분할연금 수급권자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 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① 분할연금의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2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2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72조 제1항(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자료: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2012. 7)에서 재정리.

■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하면 연금분할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던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루어짐.

- 연금의 분할은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②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③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④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에 이루어짐.
  - 따라서 연금분할의 대상은 상대방의 노령연금이며 실제적인 연금의 분할은 부부 모두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된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됨.
-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노령연금의 50%)이며 연금급여분할방식에 의해 분할됨.
- 노령연금의 분할만을 허용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이전 연금계정에 기록된 소득 내지 기여금을 분할하는 소득분할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있음.
-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분할의무자의 노령연금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계속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분할연금이 생기면 합산하여 받게 됨.
- 또한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첫 이혼 후 분할연금을 받는 도중 다른 이와 재혼하여 살다가 또 다시 이혼하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요건 충족 시 2개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의 효력은 이혼이후 당사자와 배우자인 가입자가 모두 60세가 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됨.
- 따라서 이혼이후 상대방 배우자가 재혼을 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였을 경우 또는 장애를 입게 되었을 경우 분할연금의 청구권은 상실됨.
    - 그 이유는 국민연금법에서 연금분할의 대상을 노령연금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특수지역연금과 사적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분할연금 관련 규정이 없음.

〈표 2〉 특수직역연금 및 사적연금의 분할연금 관련 규정 및 판례

구분	규정	판례
특수직역연금	미존재 (법안상정 검토)	존재 • 공무원연금도 상대방 기여도가 있어 분할하여 연금으로 지급 필요
퇴직금	미존재	존재 •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인정필요 • 이혼 당시 아직 회사에 근무 중이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불확실하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지만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
퇴직연금		미존재
개인연금	미존재	존재 • 연금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예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 존재

자료: 황신정(2012), 「이혼할 때 연금도 나누어 받나?」, 『월간생명보험』, PP. 26~28 및 법원 판례집.

- 공무원연금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분할하여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개인연금은 해약환급금예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존재함.

### 3. 분할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 국민연금제도에서 연금분할은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자가 이혼 후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이 지급될 때에만 가능하므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첫째,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혼 후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변화로 인해 소멸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점임.
  - 이혼 즉시 연금이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 의무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분할연금 수급자 역시 국민연금 수령연령인 60세가 된 이후에 분할연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후분할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분할연금 의무자가 사망, 장애 등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둘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대해서만 분할을 허용하고, 노령연금수급권 발생 이전 연금계정에 기록된 소득 내지 기여금에 대해서는 분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임.
  - 이에 따라 배우자 및 자신의 기록소득을 각각 분할하여 재합산 함으로써 향후 자신 명의의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또는 연금수급권을 증액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함.
    - 그 이유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에서는 분할연금에 본인의 연금이력을 추가하여 개인의 독립적 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임.
- 셋째,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에서는 이혼 시 작성한 분할연금의 포기각서는 무효로 간주하고 있으며 연금의 분할비율 조정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임.
  - 따라서 분할연금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sup>4)</sup>
- 넷째,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분할연금의 수급을 허용하고 있는 점임.
  - 따라서 5년 미만으로 결혼생활을 한 후 이혼한 부부는 분할연금의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등 분할연금의 수급조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문제가 존재함.
- 다섯째,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재혼이나 사망 시, 해당 분할연금을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재수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임.
  - 2010년 현재 분할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의 평균지급액은 45만 원으로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노령연금 급여액에서 분할연금을 공제하면 분할연금 의무자의 노후빈곤문제가 발생함.
    - 현재 분할연금을 수급하다 분할연금 수급자의 사망 등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 이를 다시 분할연금 의무자에게 반환할 수 없도록 규정됨.
- 또한, 공적연금 중에서 분할연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며 특수지역연금 및 사적연금에서는 분할연금의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는 점임.
  -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로 이루어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는 연금을 분할하여 공무원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반면, 공무원연금가입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즉, 연금분할 청구권이 이혼한 배우자의 신분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함.

4) 현재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재산권이라기보다 사회보장권의 성격을 보다 강조한 결과, 이혼 시 작성한 분할연금의 포기각서는 무효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할연금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호선(2010), 『분할연금 관련 급여체계 개선방안 검토』, p. 21 참조.

## 4. 각국의 연금분할제도 운영실태



### ■ 연금의 분할 사유 및 시기

- 스위스, 일본, 독일, 캐나다는 분할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이혼한 즉시 연금을 분할하여 노령·장애·사망 등 제반의 사회적 위험에 독자적인 대처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있음.

〈표 3〉 연금의 분할 사유 및 시기

구분	스위스	일본	독일	캐나다
분할 사유	이혼, 별거	이혼, 혼인의 해소, 사실혼의 해소	이혼, 사실혼 해소	이혼, 별거, 사실혼의 해소
분할 시기	분할사유 발생한 때	분할사유 발생한 때	분할사유 발생한 때	분할사유 발생한 때

자료: 각국 홈페이지(www.nenkin.go.jp, www.servicecanada.gc.kr,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bund.de); 유호선(2010); 권문일(2003); 이정우(2003); 堀 勝洋(2008) 등에 의거 작성.

- 또한, 이혼 이외에 혼인관계는 지속하지만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연금분할을 인정하여 주고 있음.

### ■ 연금의 분할 형태

-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들은 이혼시점에서 혼인기간동안의 배우자별 소득 또는 기여 기록을 분할하여 각자의 계정에 기록하는 소득분할형태의 방식도 함께 채택하고 있음.
  - 스위스 공적연금의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하였을 때 혼인기간 동안 획득한 연금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내지 기여금 등을 분할하고 있음.

〈표 4〉 연금의 분할형태 비교

구분	스위스	일본	독일	캐나다
분할형태	소득분할	소득분할	연금분할	소득분할, 연금분할

자료: 각국 홈페이지(www.nenkin.go.jp, www.servicecanada.gc.kr,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bund.de); 유호선(2010); 권문일(2003); 이정우(2003); 堀 勝洋(2008) 등에 의거 작성.

〈표 5〉 스위스의 소득분할 방법

혼인관계	여성	남성
혼인 이전	자신의 소득 100%	자신의 소득 100%
혼인기간	자신의 소득 50% 남편의 소득 50% 자녀양육/간병크레딧 50%	자신의 소득 50% 아내의 소득 50% 자녀양육/간병크레딧 50%
이혼 또는 사별 이후 기간	자신의 소득 100% 자녀양육/간병크레딧 100%	자신의 소득 100% 자녀양육/간병크레딧 100%

자료: 권문일(2003),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금포럼 제9호 봄호, p. 16.

- 캐나다는 1978년부터 이혼했을 때는 과거 배우자간 각자의 연금계정에 기록된 소득을 분할하도록 하고, 1987년부터는 혼인 내지 1년 이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금계정에 기록된 소득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음.<sup>5)</sup>

#### ■ 연금 분할 비율 및 비율조정

- 스위스, 일본, 독일, 캐나다는 연금분할의 비율을 기본적으로 2분의 1로 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비율조정이 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 연금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조항을 두고 있음.
  - 스위스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소득분할이 가능하며, 소득분할로 인해 양 배우자에게 급여가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소득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독일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예외적인 경우는 연금의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6〉 연금의 분할 비율 및 비율조정

구분	스위스	일본	독일	캐나다
분할비율 (비율조정)	2분의 1 (당사자합의 인정)	2분의 1 (당사자합의 및 재판절차에 의해 인정된 연금분할 비율 인정)	2분의 1 (당사자합의, 예외적으로 분할면제 가능)	2분의 1 (당사자합의 가능)

자료: 각국 홈페이지(www.nenkin.go.jp, www.servicecanada.gc.kr,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bund.de); 유호선(2010); 권문일(2003); 이정우(2003); 堀 勝洋(2008) 등에 의거 작성.

- 5) 캐나다의 공적연금체계는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과 캐나다연금(Canada Pension Plan)의 이른바 이층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노령보장연금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연금제도이어서 연금분할을 할 필요가 없는 반면, 캐나다 연금은 기여원칙의 사회보험방식에 의거하여 일정 소득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며 퇴직전소득의 25%를 지급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서의 연금분할이 적용됨. 캐나다연금은 연금급여분할과 소득분할제도 모두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은 이혼여성들의 사회보장권이 보다 강조되어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맞벌이 이혼 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양측의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한 분할 비율 조정이 가능함.
  - 캐나다는 연금급여 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 사전 합의서가 있는 경우 연금 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 특수지역연금 및 사적연금의 연금분할

- 스위스, 일본, 독일, 캐나다 모두 국민연금 이외에 공무원 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에도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스위스는 1983년, 일본은 2007년, 독일은 1977년, 캐나다는 1978년에 공적연금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됨.

〈표 7〉 특수지역연금 및 사적연금 분할연금 규정

구분	스위스	일본	독일	캐나다
공적연금(국민연금 외)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사적 연금	판례(제도화 검토)			

자료: 각국 홈페이지(www.nenkin.go.jp, www.servicecanada.gc.kr,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bund.de); 유호선(2010); 권문일(2003); 이정우(2003); 堀 勝洋(2008) 등에 의거 작성.

- 독일, 캐나다는 2층과 3층의 노후소득체계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서도 제도화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스위스 및 일본은 현재 사적연금 분할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분할은 이혼당시 급여산식에 따라 급여액을 산정하고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등하게 분할함.
  - 일본의 경우 이미 지급 받은 사적연금은 확정급부채무로 간주하여 분할이 가능함.

## 5.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향



- 분할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가족 내 부부간 역할에 대한 동등한 법적·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혼 이후 부부 각자가 독립적인 노후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분할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분할연금제도는 이혼 후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변화로 인해 분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소득분할형태의 분할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득분할은 이혼시점에서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별 소득 또는 기여기록을 분할하여 각자의 계정에 기록하는 형태이므로 이혼 후 배우자이었던 자의 사망 또는 장애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음.
  - 이러한 소득분할형태의 분할제도 도입은 이혼 여성의 개별 연금수급권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스위스의 국민연금처럼 소득 재분배 기능을 지니고 있어 소득분할이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sup>6)</sup>
- 둘째, 연금의 분할은 이혼 즉시 실시하여 노령·장애·사망 등 제반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독자적인 대처능력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법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정기간 이상 별거중인 부부의 경우 제한적으로 연금분할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부 중 일방은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데도 다른 일방은 최저생활수준조차 누리지 못해 재산을 둘러싼 불평등이 심한 경우, 부부 중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분할연금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6) 만약 소득을 단순 균등하는 형태의 소득분할을 도입하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균등부문)으로 인해 총 연금을 약 50% 증대하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온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소득을 분할하는 방법은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셋째,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분할연금의 비율이 조정되고, 이혼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분할연금 수급자격에 필요한 최저 혼인기간을 5년 미만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분할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의 2분의 1을 분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처럼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판결 등에 의한 분할비율 조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분할연금이 결혼기간 동안 부부의 소득 및 비소득 활동에 대해 동등한 경제적 가치 인정을 기반으로 있는 점과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분할연금수급자격에 필요한 최저혼인기간을 5년 미만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연금제도 간의 형평성차원에서 특수직역연금에도 국민연금에 준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에도 분할연금 관련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kiri**